

# LH 부산범천2 1블록 공공분양주택 잔여세대 입주자모집 정정공고[무순위]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1123-124 일원 [부산범천2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 **공급대상** : 공공분양주택 176세대 [전용면적 59㎡ 107세대, 74㎡ 69세대]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부등본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국민주택으로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인)의 기준으로 공급하며,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후당첨 단지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됨에 유의하여야 하며 단,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됨)
-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 각각 공급신청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 시 선 접수분만 유효하며 후 접수분은 당첨 무효처리 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2020.12.31.) 이후 해약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기선택된 읍선내역으로 시공되어 추가 선택 품목, 마이너스 옵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의 선택 및 변경이 불가하여 그대로 승계**하여야 합니다.
- 금회 추가모집은 **최초공고(2020.12.31)의 기당첨자(해약자 포함) 및 계약자(본인 및 세대원), 부적격을 통보받은자(본인)는 본 공고로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불가하며, 계약 체결 이후라도 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금회 추가모집은 청약저축 가입여부, 소득·자산 요건, 과거당첨사실 여부를 불문(단, 기당첨자(해약자 포함) 및 계약자(본인 및 세대원)와 부적격을 통보받은자(본인) 제외)하며, 당첨 및 계약체결 시에도 재당첨제한 및 당첨자 관리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문(2020.12.31.)을 준용하므로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apply.lh.or.kr) 등을 통해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 있습니다.

## 알 려 드 린 니 다 [정정사항: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관련 조항 추가(7페이지)]

-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024.05.22(수)**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분양과 관련된 내용은 부산범천2 1블록 홈페이지([www.lhbc2-centralhill.co.kr](http://www.lhbc2-centralhill.co.kr))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으나, 사전에 모바일 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LH청약플러스)의 '인터넷 청약 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단지에 입주 전 단지 특성 및 입주예정자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건설사 브랜드인 서한이다음을 적용할 계획이며, 건설사로부터의 상표권 사용이 제한되는 등 사용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당초대로 LH 브랜드인 센트럴힐을 단독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공공분양주택과 분양전환 10년 공공임대주택의 혼합 단지이며, 총 498세대 중 394세대는 공공분양주택, 104세대는 분양전환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같음)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뉘어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개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원납입'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산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해당 분양권등의 주택을 취득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해 **전매제한이 1년** 적용됩니다.

구분	기준일(~로부터)	기간	관련 법령
전매제한	당첨자 발표일	1년	「주택법」 제64조,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별표3 ※ 전매 제한 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닐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2024년)

공 고	접 수	당첨자 및 예비자 발표	당첨자 및 예비자 서류제출	계 약	
				전자	현장
'24.05.22(수)	'24.06.17(월)~19(수)	'24.06.21(금)	'24.06.26(수)~28(금) (10:00~17:00)	'24.08.05(월)~07(수) (10:00~16:00)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			LH 부산울산지역본부 2층 마이홈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LH 부산울산지역본부 2층 마이홈

※ 현장 서류제출 장소 및 현장 계약장소 : LH부산울산지역본부 2층 마이홈(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장에 직접 오실 필요 없이 **전자계약기간(2024.08.05(월) ~ 2024.08.07(수) 10:00~16:00) 내 계약금 입금 후 공동인 증서(은행용 가능)를 이용하여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전자계약을 원하지 않는 분은 계약 체결기간에 LH부산울산지역본부 2층 마이홈(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에 'III.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안내 등'에 게시된 서류를 갖춰 방문하여 계약체결 할 수 있습니다.

※ **입금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계약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입주자 선정 및 통호수 배정은 우리 공사 전산시스템을 통해 실시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금회 추가모집은 청약저축 가입여부, 소득·자산 요건, 과거당첨사실 여부를 불문(단, 기당첨자(해약자 포함) 및 계약자(본인 및 세대원)와 부적격을 통보받은 자(본인) 제외)하며, 당첨 및 계약체결 시에도 재당첨제한 및 당첨자 관리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은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라며, 반드시 해당 접수일에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접수일 이외의 일자에는 접수불가 함에 유의)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 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무주택여부 등 조회 확인을 위해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자는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과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 하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 시 무주택 여부 등 조회를 위해 별도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I 공급규모·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 1. 공급규모

■ 부산범천2지구 1블록 : 공공분양주택 17~25층 5개동 전용면적 85㎡이하 394세대 중 176세대

### 2. 공급대상

블록	주택형	주택 타입	발코니 유형	세대당 주택면적(㎡)				공유대지면적(㎡)	공급세대수			최고 층수	1층 세대수		입주예정 시기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면적(계)	계	기계약호수		금회공급	전체		금회공급		
				주거전용	주거공용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1BL	합 계											394	218	176	25	16	11	'25.02
	059.9600A	59A	확장	59.96	20.2102	5.9810	38.4944	124.6456	29.5276	138	83	55	25	5	4			
	059.9400B	59B	확장	59.94	19.6290	5.9791	38.4816	124.0297	29.3209	106	54	52	25	5	4			
	074.9400A	74A	확장	74.94	24.3613	7.4753	48.1117	154.8882	36.5968	150	81	69	25	6	3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청벌**로 신청해야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팜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는 세대별 분양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입니다. 지적공부정리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향후 지적정리 후 면적은 일부 증감될 수 있습니다.

-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3. 공급금액(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선택품목 비용 별도)

※ 금회 공급 주택은 계약세대 등으로 기선택된 옵션내역으로 시공되어, 금번 공급호수 대상세대 모두 공간선택, 추가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등의 선택 및 변경이 불가하여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오니, 청약 전 반드시 해당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원]

형별	타입별	층별	타입별	주택가격	계약금(10%)	잔금(90%)	
						입주잔금	용자금(주택도시기금)
						입주시	
					계약시		
059.9600A	59A	1층	기본형	239,210,000	23,921,000	160,289,000	55,000,000
		2층	기본형	247,180,000	24,718,000	167,462,000	55,000,000
		3층	기본형	255,150,000	25,515,000	174,635,000	55,000,000
		4층~최상층	기본형	265,790,000	26,579,000	184,211,000	55,000,000
059.9400B	59B	1층	기본형	235,250,000	23,525,000	156,725,000	55,000,000
		2층	기본형	243,090,000	24,309,000	163,781,000	55,000,000
		3층	기본형	250,930,000	25,093,000	170,837,000	55,000,000
		4층~최상층	기본형	261,390,000	26,139,000	180,251,000	55,000,000
074.9400A	74A	1층	기본형	293,310,000	29,331,000	188,979,000	75,000,000
		3층	기본형	312,870,000	31,287,000	206,583,000	75,000,000
		4층~최상층	기본형	325,910,000	32,591,000	218,319,000	75,000,000

-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해당 주택은 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조건의 범위 내에서 대환(재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영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입주 시 용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은 입주자는 입주하는 날(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환일(실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실행일을 말함) 전일까지 용자금에 대한 이자를 공사가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용자금에 대한 이자 납부기한 내 미납시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 4.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 발코니 확장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로,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부분별 금액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발코니 확장 금액 (단위:천원)		계	침실1	침실2	침실3	거실	주방	드레스룸	욕실 및 기타
59A	기본공사비(A)	70,746	583	21,673	16,651	27,454	3,240	0	1,145
	확장공사비(B)	76,225	1,703	22,933	17,905	28,927	3,614	0	1,145
	계약자부담액(B-A)	5,479	1,120	1,260	1,254	1,473	373	0	0
59B	기본공사비(A)	70,184	583	12,325	13,202	20,185	22,028	0	1,861
	확장공사비(B)	77,167	1,425	12,815	13,713	20,793	26,560	0	1,861
	계약자부담액(B-A)	6,983	842	490	512	608	4,532	0	0
74A	기본공사비(A)	82,164	606	15,207	13,394	21,062	19,138	8,777	3,981
	확장공사비(B)	89,070	1,734	15,751	13,894	21,728	22,372	9,610	3,981
	계약자부담액(B-A)	6,906	1,128	543	501	667	3,234	833	0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 ※ 발코니 확장금액은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 부담금액은 산출금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 ※ 각 실별 발코니 확장금액에는 확장으로 인한 상호설치 비용이 포함됩니다.

#### ■ 발코니 확장금액 납부 안내

구분 (단위 : 천원)	계약금	잔금
금액	1,000천원	발코니 확장총액에서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
납부시기	계약 시	입주시 (주택가격 잔금 납부시/입주지정기간내)

#### ■ 금회 공급 세대별 옵션 안내

- ※ 금회 공급 주택은 계약세대가 선택한 옵션내역으로 시공되어 기선택된 옵션내역의 변경 또는 추가선택은 불가하며, 이외의 항목은 기본형으로 설치되오니 청약 전 최초 공고문과 팸플릿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추가선택품목비용은 분양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해당 금액에는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자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세대별 주택가격 및 옵션(발코니 확장 포함)가격은 아래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대별 옵션내역은 별도 첨부된 자료(PDF)를 필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안내 : 키른수납장(주방), 불박이장, 드레스룸 가구(확장대 및 불박이장), 하이브리드 룩탐, 시스템에어컨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0.12.31.) 및 팸플릿 참조)

[단위 : 천원]

동	호	타입	공급금액	옵션가격 (발코니확장포함)	계	동	호	타입	공급금액	옵션가격 (발코니확장포함)	계
101	101	059.9600A	239,210	5,479	244,689	103	303	059.9600A	255,150	5,479	260,629
101	102	059.9600A	239,210	8,899	248,109	103	402	059.9400B	261,390	10,168	271,558
101	103	059.9400B	235,250	6,983	242,233	103	404	059.9600A	265,790	13,213	279,003
101	304	074.9400A	312,870	6,906	319,776	103	503	059.9600A	265,790	5,479	271,269
101	403	059.9400B	261,390	16,665	278,055	103	601	074.9400A	325,910	6,906	332,816
101	404	074.9400A	325,910	13,556	339,466	103	602	059.9400B	261,390	17,429	278,819
101	502	059.9600A	265,790	12,356	278,146	103	604	059.9600A	265,790	14,439	280,229
101	503	059.9400B	261,390	13,383	274,773	103	701	074.9400A	325,910	6,906	332,816
101	504	074.9400A	325,910	6,906	332,816	103	702	059.9400B	261,390	13,943	275,333
101	602	059.9600A	265,790	10,642	276,432	103	703	059.9600A	265,790	5,479	271,269
101	603	059.9400B	261,390	20,179	281,569	103	704	059.9600A	265,790	14,439	280,229
101	604	074.9400A	325,910	6,906	332,816	103	801	074.9400A	325,910	13,556	339,466
101	701	059.9600A	265,790	11,579	277,369	103	804	059.9600A	265,790	13,089	278,879
101	704	074.9400A	325,910	22,645	348,555	103	901	074.9400A	325,910	6,906	332,816
101	802	059.9600A	265,790	12,502	278,292	103	903	059.9600A	265,790	5,479	271,269
101	902	059.9600A	265,790	14,069	279,859	103	1004	059.9600A	265,790	13,866	279,656
101	903	059.9400B	261,390	6,983	268,373	103	1101	074.9400A	325,910	13,898	339,808
101	1103	059.9400B	261,390	15,751	277,141	103	1103	059.9600A	265,790	5,479	271,269
101	1104	074.9400A	325,910	6,906	332,816	103	1104	059.9600A	265,790	12,566	278,356
101	1201	059.9600A	265,790	13,866	279,656	103	1201	074.9400A	325,910	17,644	343,554
101	1202	059.9600A	265,790	17,990	283,780	103	1302	059.9400B	261,390	6,983	268,373
101	1203	059.9400B	261,390	6,983	268,373	103	1401	074.9400A	325,910	13,556	339,466
101	1204	074.9400A	325,910	6,906	332,816	103	1501	074.9400A	325,910	6,906	332,816
101	1302	059.9600A	265,790	13,649	279,439	103	1502	059.9400B	261,390	13,383	274,773
101	1304	074.9400A	325,910	23,495	349,405	103	1504	059.9600A	265,790	10,229	276,019
101	1401	059.9600A	265,790	5,479	271,269	103	1601	074.9400A	325,910	13,556	339,466
101	1403	059.9400B	261,390	15,461	276,851	103	1603	059.9600A	265,790	11,579	277,369
101	1503	059.9400B	261,390	6,983	268,373	103	1704	059.9600A	265,790	5,479	271,269
101	1504	074.9400A	325,910	12,406	338,316	103	1802	059.9400B	261,390	17,554	278,944
101	1603	059.9400B	261,390	6,983	268,373	103	1803	059.9600A	265,790	15,506	281,296
101	1702	059.9600A	265,790	17,990	283,780	103	1902	059.9400B	261,390	6,983	268,373
101	1703	059.9400B	261,390	6,983	268,373	103	2001	074.9400A	325,910	6,906	332,816
101	1801	059.9600A	265,790	10,229	276,019	103	2002	059.9400B	261,390	15,751	277,141
101	1803	059.9400B	261,390	13,673	275,063	103	2003	059.9600A	265,790	9,706	275,496
101	2102	059.9600A	265,790	8,180	273,970	103	2103	059.9600A	265,790	11,419	277,209
101	2202	059.9600A	265,790	12,777	278,567	103	2104	059.9600A	265,790	14,926	280,716
101	2302	059.9600A	265,790	11,040	276,830	103	2302	059.9400B	261,390	6,983	268,373
101	2401	059.9600A	265,790	5,479	271,269	103	2402	059.9400B	261,390	6,983	268,373
102	101	074.9400A	293,310	6,906	300,216	103	2404	059.9600A	265,790	5,479	271,269
102	102	059.9600A	239,210	17,430	256,640	103	2502	059.9400B	261,390	13,383	274,773
102	103	059.9400B	235,250	13,383	248,633	103	2504	059.9600A	265,790	16,283	282,073
102	104	074.9400A	293,310	22,935	316,245	105	102	059.9400B	235,250	15,751	251,001
102	202	059.9600A	247,180	5,479	252,659	105	402	059.9400B	261,390	13,383	274,773
102	203	059.9400B	243,090	6,983	250,073	105	403	074.9400A	325,910	6,906	332,816

등	호	타입	공급금액	옵션가격 (별코나확장포함)	계	등	호	타입	공급금액	옵션가격 (별코나확장포함)	계
102	303	059.9400B	250,930	16,858	267,788	105	501	074.9400A	325,910	6,906	332,816
102	304	074.9400A	312,870	13,556	326,426	105	502	059.9400B	261,390	16,118	277,508
102	401	074.9400A	325,910	6,906	332,816	105	601	074.9400A	325,910	6,906	332,816
102	403	059.9400B	261,390	13,673	275,063	105	603	074.9400A	325,910	13,556	339,466
102	404	074.9400A	325,910	14,758	340,668	105	701	074.9400A	325,910	6,906	332,816
102	501	074.9400A	325,910	6,906	332,816	105	702	059.9400B	261,390	13,673	275,063
102	602	059.9600A	265,790	11,579	277,369	105	703	074.9400A	325,910	6,906	332,816
102	603	059.9400B	261,390	6,983	268,373	105	802	059.9400B	261,390	20,739	282,129
102	702	059.9600A	265,790	5,479	271,269	105	803	074.9400A	325,910	18,702	344,612
102	703	059.9400B	261,390	15,751	277,141	105	901	074.9400A	325,910	21,498	347,408
102	801	074.9400A	325,910	6,906	332,816	105	1001	074.9400A	325,910	6,906	332,816
102	802	059.9600A	265,790	11,942	277,732	105	1102	059.9400B	261,390	13,383	274,773
102	804	074.9400A	325,910	6,906	332,816	105	1201	074.9400A	325,910	23,205	349,115
102	901	074.9400A	325,910	17,555	343,465	105	1203	074.9400A	325,910	6,906	332,816
102	902	059.9600A	265,790	11,579	277,369	105	1401	074.9400A	325,910	10,766	336,676
102	903	059.9400B	261,390	14,451	275,841	105	1403	074.9400A	325,910	6,906	332,816
102	1102	059.9600A	265,790	13,793	279,583	105	1501	074.9400A	325,910	6,906	332,816
102	1104	074.9400A	325,910	16,159	342,069	105	1503	074.9400A	325,910	6,906	332,816
102	1201	074.9400A	325,910	17,555	343,465	105	1601	074.9400A	325,910	13,556	339,466
102	1301	074.9400A	325,910	6,906	332,816	105	1901	074.9400A	325,910	14,758	340,668
102	1304	074.9400A	325,910	20,441	346,351	105	2103	074.9400A	325,910	6,906	332,816
102	1401	074.9400A	325,910	16,442	342,352	106	101	074.9400A	293,310	14,758	308,068
102	1402	059.9600A	265,790	10,229	276,019	106	202	059.9400B	243,090	13,673	256,763
102	1501	074.9400A	325,910	9,413	335,323	106	301	074.9400A	312,870	14,758	327,628
102	1502	059.9600A	265,790	13,866	279,656	106	401	074.9400A	325,910	17,265	343,175
102	1504	074.9400A	325,910	6,906	332,816	106	402	059.9400B	261,390	6,983	268,373
102	1701	074.9400A	325,910	15,048	340,958	106	503	059.9600A	265,790	12,066	277,856
102	1702	059.9600A	265,790	5,479	271,269	106	601	074.9400A	325,910	19,855	345,765
102	1803	059.9400B	261,390	6,983	268,373	106	602	059.9400B	261,390	6,983	268,373
102	1804	074.9400A	325,910	6,906	332,816	106	701	074.9400A	325,910	6,906	332,816
102	1901	074.9400A	325,910	13,556	339,466	106	702	059.9400B	261,390	19,632	281,022
102	1903	059.9400B	261,390	6,983	268,373	106	703	059.9600A	265,790	5,479	271,269
102	1904	074.9400A	325,910	13,669	339,579	106	801	074.9400A	325,910	6,906	332,816
102	2101	074.9400A	325,910	13,556	339,466	106	802	059.9400B	261,390	16,665	278,055
102	2102	059.9600A	265,790	12,356	278,146	106	902	059.9400B	261,390	6,983	268,373
102	2201	074.9400A	325,910	23,495	349,405	106	903	059.9600A	265,790	14,069	279,859
102	2202	059.9600A	265,790	17,140	282,930	106	1002	059.9400B	261,390	15,751	277,141
102	2203	059.9400B	261,390	10,633	272,023	106	1101	074.9400A	325,910	15,048	340,958
102	2402	059.9600A	265,790	15,303	281,093	106	1103	059.9600A	265,790	12,356	278,146
102	2501	074.9400A	325,910	6,906	332,816	106	1202	059.9400B	261,390	18,332	279,722
102	2503	059.9400B	261,390	15,558	276,948	106	1301	074.9400A	325,910	13,556	339,466
103	102	059.9400B	235,250	6,983	242,233	106	1501	074.9400A	325,910	16,159	342,069
103	104	059.9600A	239,210	11,579	250,789	106	1502	059.9400B	261,390	6,983	268,373
103	302	059.9400B	250,930	6,983	257,913	106	1602	059.9400B	261,390	15,751	277,141

## 5. 입주금 납부 안내

- 입주금(공급금액)은 계약금, 잔금(입주잔금 및 주택도시기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합니다.(은행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5.0%(변동 시 별도 안내)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 ※ 단, 주택도시기금 용자금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
-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나, 주택도시기금 용자금은 분할하여 상환 또는 대환할 수 없습니다.
-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연 8.5%,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하므로 입주지정기간 확정 후 잔금 정산(일부 반환 또는 추가 납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드립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 내줌)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을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II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선정방법

### 1. 신청자격

- 급회 공급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동일공고 내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 급회 모집은 청약저축 가입여부, 소득·자산 요건, 과거당첨사실 여부를 불문(단, 최초공고(2020.12.31.)의 기당첨자(해약자 포함) 및 계약자(본인 및 세대원)와 부적격을 통보 받은 자(본인) 제외)하며, 당첨 및 계약체결 시에도 재당첨제한 및 당첨자 관리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최초공고(2020.12.31) 기당첨자(해약자 포함) 및 계약자(본인 및 세대원) 또는 부적격 당첨 통보받은자(본인)는 본 공고로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불가하며, 청약 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고 계약체결 이후라도 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과거 당첨이력(단, 최초공고(2020.12.31.)의 기당첨자(해약자 포함) 및 계약자(본인 및 세대원)와 부적격을 통보받은 자(본인) 제외)와 상관없이 청약 가능하며, 소득자산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해당주택 당첨자는 향후 재당첨 제한 미적용)

###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급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 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발표(2024.06.21.) 후 주택(분양권 등 포함)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등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 공급신청 자격자

-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여부 판단대상

-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 [무주택세대구성원]

-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같음)
-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 및 분양권등]

-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분양권등)의 공유 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권등을 매개로 승계취득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Ⅲ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안내 등

#### 1.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됩니다.

당첨자 및 예비자 발표	서류제출(당첨자 및 예비자)	계약체결(당첨자)	
		전자계약	현장계약
'24.06.21(금) 17:00 이후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apply.lh.or.kr)	'24.06.26(수)~28(금) (10:00~17:00) LH 부산울산지역본부 2층 마이홈	'24.08.05(월)~07(수) (10:00~16:00)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LH 부산울산지역본부 2층 마이홈

##### 당첨자 확인 방법

인터넷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 → 인터넷 청약 → 청약결과조회 → 당첨자 조회 (공동인증서 로그인하신 경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ARS	고객전화 연결(1661-7700)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등 안내

-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명단은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에 게시하며,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 앱 또는 ARS(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우편접수 불가)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합니다.
- ※ 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 예비입주자 계약체결 일정은 미계약으로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은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 우리공사에게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고지(LH 청약플러스를 통하여 정보수정)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2.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제출서류(입주자모집공고일 2024.05.22. 이후 발급분에 한함)

##### ■ 안내사항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서류제출 기한(2024.06.26.~2024.06.28.)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포기로 간주됩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5.22.)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포함되어 발급받아야 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본인이 직접 서류제출 시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을 지참하여야 하며,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LH가 신청자의 신청자격 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조사대상자 전원의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LH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 불가능 합니다.(동의서 양식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별도 첨부 확인하시어 미리 작성 후 제출하시기 바람)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 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5.22.)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발급]

필수	서류유형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①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가능
○		②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본인 및 세대구성원	※ LH 청약플러스에 게시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만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④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⑤ 국내거소신고증 및 외국인등록증	배우자, 세대원	•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이 외국인인 경우



### 3. 계약 시 구비서류(입주자모집공고일 2024.05.22. 이후 발급분에 한함)

#### ■ 안내사항

- 계약시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5.22.)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포함되어 발급받아야 합니다.
- 아래의 계약 시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 본인 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배우자포함)로 간주되며, 위 '본인 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계약 시 구비서류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 분	계약서류	
본인 계약 시	현장계약	① 계약금(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입금 확인서류 : 입금계좌는 계약체결 시 별도 안내, <b>현장수납 불가</b> * 주택공급금액 10% + 선택사양품금액 10%, 옵션 선택에 따른 계약금 확인 후 입금 바랍니다.
		② 당첨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가능
		③ 당첨자의 도장(본인 계약 시 서명날인도 가능)
전자계약	① 계약자 본인명의 휴대폰	
	② 계약자 본인명의 공동인증서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서류	본인 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배우자포함)로 간주되며, 위 '본인 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인감증명 방식	서명확인 방식
	① 위임장 ※ 인감도장 날인 필수	① 본인(계약자)이 자필서명한 위임장(LH청약플러스-분양-임대정보-자료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② 당첨자의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본인 발급분에 한함) 및 인감도장	② 본인(계약자)서명사실확인서(발급 시 위임받는 사람 기재)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③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 전자계약 관련 안내사항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2024.08.05.(월)~2024.08.07.(수), 10:00~16:00)에 온라인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전자계약 절차** : 계약금 입금 → 공사 입금확인 →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 계약준비 완료 안내 문자발송(약 30분 소요)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 로그인(본인명의 휴대폰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 계약체결(공동인증서) → 계약서 출력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10:00~16: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체결 마감시간(16:00) 이후에는 전자계약체결이 불가**하오니, 전자계약체결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금확인을 위한 소요시간을 고려하시어 미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계약 방식으로 계약 체결시, 등기는 전자등기 방식이 원칙이며**, 비전자 등기 시 등기소에서는 전자계약서 출력물을 인정하지 않고, 출력물에 거래당사자 등의 인장날인을 요구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계약은 정당한 당첨자로 선정된 사람과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함에 따라 부부공동명의가 불가합니다. 전자계약 체결이후 부부공동명의는 가능하나, 현장계약으로 진행됨에 따라 최초전자계약을 체결하였다하더라도 **부부공동명의 진행 시 최초 전자계약은 파기**됩니다.

## IV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 1. 전매 제한 안내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2024.06.21)로부터 1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전매 제한 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봄
-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6에 의거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제한기간 내에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리 공사에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 간 입주자격을 제한합니다.

### 2.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1페이지 '알려드립니다' 참조)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단,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 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됩니다.

### 3. 예비입주자 등에 대한 사항

- 예비입주자의 서류 제출 및 동호배정 추첨 불참 시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이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공사가 보유한 예비입주자 관련 정보는 모두 폐기합니다.
- 시행 및 여건에 따라 예비입주자의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금회 예비입주자로서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LH 부산울산 지역본부 판매팀을 방문 또는 유선·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우리 공사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4.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최초입주자모집공고문, 팸플릿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당첨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과거 당첨사실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등)을 받게 됩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최초 분양 시 분양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마감재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체결 전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총주택가격(주택가격 + 발코니확장비용 + 선택품목(옵션)금액)의 10퍼센트)을 공제합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입주 약 2개월 전에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당첨 또는 계약체결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LH 부산울산지역본부 판매팀으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변경방법 :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공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 → 고객센터 → 분양주택 → 개인정보변경]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02.21 시행)에 따라 주택의 공급(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우리 공사 단독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실거래 내역을 신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5.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번호 위반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 조치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6. 지구 및 단지 여건 등

##### ■ 지구 여건

- 본 단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지구로서 정비계획 및 각종 영향평가 등에 의해 사업계획 일부가 변경될 수 있음
- 지구 북측의 공공공지는 사업시행인가 조건사항에 의거 경관녹지로의 변경에 대해 관련부서(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며,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당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지적확정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정산하기로 함  
(단, 주택법 등 법령이 정하는 오차범위 내에서의 증감 차이는 정산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기간(일정)은 입주예정일에 맞춰 계획변경을 추진할 예정임
- 지구 주변으로 기존 가옥(노후)이 연결하고 있음
- 지구 경계변으로 현재 경작중인 토지가 연결하여 있고 경작에 따른 퇴비 약취 등이 있을 수 있음
- 지구 외 사찰(관음사)과 공장(부산진시니어 공동작업장)이 위치하고 있음
- 지구계획(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각 시설 설치계획, 각종 영향평가) 및 인허가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에 조정 될 수 있음
- 지구의 개발 사업은 현재진행중이며 조성사업 과정에서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제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의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변경 등으로 인해 토지 이용계획 및 주변 기반시설이 변경 될 수 있음
- 지구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공시설, 공원, 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의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지구 진출입로 외 진입도로는 기존 도로가 좁아 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지구 외 연결도로 중 중3-277호선 및 3-278호선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2017-2호, 2020-97호에 의거 폐지되었음
- 지구 남동측으로 범천4주택(민간조합) 사업추진중임
- 지구에서 직선거리 2km이내에 부산지하철 1호선 서면역, 범내골역, 부산지하철 2호선 가야역, 부암역, 동의대역이 위치하고 있음
- 지구 북동측 직선거리 약 2km에 부산시민공원, 북측 직선거리 4km에 부산어린이대공원이 위치하고 있음
- 사업지구 동측 경계로부터 약 400m직선거리에 경부선 선로가 지나고 있음
- 지구 내에는 분양주택, 공공임대 등이 함께 계획되어 있음

##### ■ 단지 외부여건

- 당해 지구는 행정구역 상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일대의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거주 지역이며, 북동측 1.5km 지점에 부산진구청이 위치하고 있음
- 단지 인접 경계부와 외부공간 간에 레벨차이가 있어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차부위는 옹벽 등이 설치될 예정임
- 인접 녹지 및 단지 내외 산책로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의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외부 레벨차는 추후 기반시설공사 및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구조물 설계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외의 조경식 시공기간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을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주변 도로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관리하며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향별·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중(3-278호선)도로는 부산진구청소유로 도로부 중단경사가 급해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단지 내외부 레벨차로 인하여 설치되는 구조물은 인허가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외부 급격한 단차로 인하여 우수수출깊이가 깊어 맨홀내 우수낙하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 단지 내부여건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본 단지의 지하 주차장 차로의 높이는 2.3m임

- 단지 인접 경계부와 외부공간 간에 레벨차이가 있어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차부위는 옹벽 등이 설치될 예정임
- 분양시점 기준으로 도시기반시설의 실시설계 및 시공의 미완료에 따른 준공시 대지면적 또는 경계 등의 증감은 확정측량을 통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정리할 예정이며, 공급대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일부 동 1개 층은 필로티로 시공되며, 필로티 내부의 일부는 제연 헬륨으로 시공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1층 및 하부 PIT 층에 제연설비의 제연팬 및 외기취입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가동 시 소음·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민운동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의 냉방을 위한 실외기로 인해 미관 저해, 소음·먼지 등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에는 지하저수조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설치 위치 : 104동, 105동 사이)
- 단지 내외부 레벨차는 추후 기반시설공사 및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구조물 설계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외의 조경석 시공구간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을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주변 도로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 단지 내에는 어린이집이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사는 아파트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부산진구와 논의할 예정임. 다만, 지자체 사정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운영이 불가하거나 입주(예정)자들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에 찬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작은도서관, 방과후교실, 경로당 등), 어린이집 등에 내부 시설물(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음. 단, 피트니스센터에 운동기구가 제공될 예정이며 설계 및 제공되는 운동기구(의자, 소파 등 이동식가구 등 기타 비품은 일체 제공되지 않음)에 대해서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함
- 단지 내 휴게 공간과 어린이 놀이터, 주민공동시설 등의 설치로 소음발생 및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 불빛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재활용 보관시설 위치에 따라 저층부 세대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재활용 보관시설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음
- 각 동에 설치된 승강기와 승강기 기계실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승강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음
- 동별 승강기 설치 인승, 속도는 관련 법 및 주택 건설기준 등에 의한 세대 조합별 운행 층수에 의한 규격으로 적용 설치될 계획임
- 승강기 운행에 따른 승강로 및 권상기 인접 세대의 소음이 세대로 전달(옥외 승강로 포함) 될 수 있으며, 향후 이와 관련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무인택배 보관함은 권역별로 일부 동(2개소 예정)에 설치 예정
- 단지 내 전기 인입용 한전설비(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용)가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 보안등, 가로등, 공원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불빛으로 인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 내 외부 승강기가 설치되며 인접 동 및 세대는 외부 승강기 운행에 따른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와 관련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지하에는 전기설·발전기실이 설치되며 비상발전기의 주기적 시험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소음, 진동 및 매연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설치위치 : 지하주차장 101동 인근)
- 지하층 승강기 홀에 설치되는 환기설비 및 제습기 가동으로 전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됨
-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에 충전용 전원 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 내 주차 및 충전 방해 행위가 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
- 103동 옥상에 지상파(디지털) 안테나 및 무궁화 위성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파 수신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CCTV는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승강기, 어린이 놀이터, 각 동 출입구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지하주차장에 설치됨
- 아파트 진·출입구에 디지털차량번호인식 시스템의 주차관제(차량출입통제) 설비가 설치될 예정임
- 지하주차장 출입구 인근동은 차량 진·출입 시 경보음 발생과 차량 전조등 불빛으로 생활에 불편을 느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선, 배관, 케이블, 유도등 등이 시공됨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 지붕층에 피뢰침이 설치되며, 일부동·일부층은 아파트 외벽에 축뢰용 피뢰침이 시공됨
- 단지 내 조경 및 세부식재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지 내 조경 식재(수종 및 배식) 및 시설물(어린이놀이대, 휴게시설 등)과 관련된 사항은 팜플릿 등의 이미지와 다를 수 있음
- 자전거 보관소는 동별로 설치되지 않고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수량 산정 후 설치될 예정임
- 103동 옥탑층에는 소화용수조가 설치됨
- 지하주차장이 지하4개층으로 외기온도에 따라 결로발생 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의 환기를 위한 개구부로 우수유입이 될 수 있음
- 105동 1층 장애인램프이용으로 인하여 1층 세대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수 있음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하주차장1~4층 헬륨-2 지하주차장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중계장치가 설치될 예정이며, 서비스안테나를 지하층 및 옥외에 설치할 예정임. 단, 설치장소 및 설치수량은 이동통신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현관, 발코니 등 바닥 단차는 시공과정상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일부평형은 4층부터 최상층까지 대피공간이 시공되며, 3층부터 10층에는 대피공간 내에 완강기가 설치될 예정임. 그에 따라 외부창호 형태 및 발코니 문의 재질이 상이함
- 세대 발코니 내 대피공간은 화재시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 (단, 2층이하 세대의 경우 법적기준에 근거하여 창고 등의 기타시설로 활용할 수 있음)
- 대피공간은 철제 방화문이 설치될 예정으로, 외기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설치되는 창호는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음. 또한 대피공간은 화재 시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
- 대피공간(1~3층은 동일 위치)의 창호는 3층 이상은 안여단이창, 1~2층은 미서기창이 설치됨(팜플릿 확인 요망)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사육,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및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 및 발코니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세대통합관리반이 59타입 신발장, 74타입 침실2내에 설치되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음
- 마감자재 내역은 주택 타입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관련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차별화 및 기능개선이 용이한 평면으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옥탑, 지층, 축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 길이 및 높이, 실외기 설치 공간 등)등의 디자인 변경과 일부동의 세대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음
- 세대 아트월 부위에 벽걸이 TV 고정 시 충격에 의한 마감재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며, 세대아트월부위는 경량벽체로 별도 보강 하여 경량벽체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함
- 창호, 가구, 타일, 석재, 바닥재, 벽지 등의 마감자재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팜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와 다소 상이한 색상과 무늬의 자재가 설치될 수 있음
- 팜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자재는 성능향상을 위한 설치물의 변경으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팜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상품 등이 혼합되어 표현되어 있으며, 본 공사에서는 전상품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보조 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거실 테이블,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액자 및 소품 등은 전상품임)
-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해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에 일반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각 세대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면적은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임
- 발코니 확장세대는 세대별 조건 및 필수설비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팜플릿 등에 적용된 자재 중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나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가스쿱탑은 가스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실제 시공모델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또는 렌지후드 배기덕트 등과 겹치는 일부 평형은 상부장이 일부 조정되거나 문짝이 완전히 열리지 않을 수 있음
- 주방가구 중 싱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주위배관, 싱크배수관 등이 설치되므로 그에 따라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함
- 주방가구, 반침가구, 조명기구, 거실월패드, 소화용기구, PVC배관 등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이 사용될 예정이며, 펌플릿에는 유사 이미지를 구현한 것으로 실제 설치 시 선정된 업체에 따라 디자인 및 색상이 변경될 수 있음.
- 설비 배관과 관련하여 PD점검기가 세대 내외에 설치될 수 있음
- 당해 지구는 개별난방지구로서 개별보일러를 통한 난방수와 온수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방식임
- 일부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별도배관을 설치하므로 고층부와 배관이 상이함
- 수도꼭지(세탁, 손빨래, 물뿌리기)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대피공간에는 배수용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음
- 거실 및 침실1에 매립되는 에어컨용 냉매배관은 거실은 스탠드형, 침실1은 벽걸이형을 기준으로 설치되며, 침실1의 에어컨실내기 매립박스는 액자형 기준으로 설치되므로 가로형 에어컨을 설치할 경우 매립형박스가 노출될 수 있음
- 타입별로 전면 또는 후면에 에어컨 실외기 공간이 별도로 시공되며, 에어컨 가동 시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소음 및 온풍이 실내로 유입될 수 있음
- 발코니에는 세대환기용 유니트 및 덕트가 설치됨
- 세대내 실내환기는 1층환기방식(송풍기와 배풍기를 이용 급기와 배기)을 적용하며, 덕트와 연결된 디퓨저(공기배출구)는 거실과 침실 천장에 시공되며 작동시 소음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천장에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됨
- 세대욕실 천정에 점검구가 설치됨
- 주방가구 개수대하부장에 온수분배기가 설치됨
- 주방가구 후드장 상부는 수납이 제한적임
- 일부세대에는 에어컨 실외기 설치공간이 외부에 별도로 시공되어 실외기 설치 및 철거시 주의가 필요하며, 에어컨 가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실내로 유입될 수 있음
- 에어컨 실외기 설치공간에 설치된 AL그릴창으로 인해 조망이 불리할 수 있으므로 계약시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와 관련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에어컨용 냉매배관은 거실 및 침실1에 매립 설치되며 주덕형별로 에어컨 냉매 박스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 침실1의 에어컨 매립용 전선은 통신선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전원선으로 사용 불가함
- 욕실팬 작동 직후에 댐퍼가 열리는 동안 운전음(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부부욕실 내 레인형 샤워기 사용 후 샤워헤드 내 잔류수가 떨어질 수 있으며, 욕실 양면기는 절수형이 설치되므로 세정력이 다소 약해 보일 수 있음.
- 커튼 박스 높이 및 길이는 소화배관 간섭으로 인해 실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일부 상부장 후면에 가스배관 또는 상부장 내부 레인지후드 배기 덕트, 자동차 소화기가 설치되어 수납공간이 줄어들거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 싱크대(개수대) 하부에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주위 배관 등이 설치되므로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는 부적합함
- 주방가구 하부는 난방 코일이 설치되지 않음
- 주방 배기 방식은 기존의 개별 배기 방식이 아닌 공용 배기 방식이 적용됨.(공용 배기 방식은 레인지 후드 내 배기팬 등이 설치되지 않고 아파트 옥상에 공용 루프팬을 설치하여 공용으로 배기)
-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원활한 배수와 역류 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배관을 설치하므로 고층부와 배관이 상이함
- 발코니에 자동 빨래건조대(조명포함)는 전 세대(최상층 포함) 천장형으로 설치 예정임
- 일부 발코니에 우수 및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홍통의 위치와 개수는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
- 발코니 천장에는 환기용 유니트 및 덕트가 설치되며 작동 시 소음·진동 및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에는 스프링클러 축척형 헤드가 설치되며 주덕형별 설치수량은 달라질 수 있음
- 소방 관련 법에 따른 제연설비가 설치된 아파트에는 일부 세대의 현관 출입문에 차압측정공이 설치됨
- 발코니(세탁기실 및 에어컨 실외기실 등)는 대용량의 세탁기, 에어컨 실외기 및 건조기 등의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며, 세탁기문과 벽 및 기타설비와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세탁기, 에어컨 실외기 등의 사이즈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세대 무인경비 동작감지기는 1,2층 및 최상층은 발코니 및 침실의 외부창호 측면부 각 1개소에 설치되며, 그 외층 동작감지기는 거실 창호 측면부 1개소에 설치됨
- 홈네트워크 시스템 세대 단말기(WallPad10"LCD)는 게이트웨이와 통신하며 방범 서비스(도어카메라, 현관자석감지기 및 동작감지기와 연동), 제어 서비스(가스밸브차단, 거실 및 침실1 네트워킹스위치조명, 난방, 디지털도어록), 대기전력차단서비스(대기전력차단스위치 연동), 단지공용서비스(공동현관통제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주차관제시스템 연동)를 제공할 수 있음
- 스마트홈 생활정보기가 설치되며, 일괄소등(현관 센서등 제외), 엘리베이터 호출 및 가스 차단, 기상정보 등의 기능을 함
- 발코니 전기 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으며, 세탁기, 보일러 및 환기유닛 전원용 콘센트에 한하여 설치됨
- 최상층 세대의 발코니 조명기구와 스피커는 벽부형으로 설치되며 최상층을 제외한 기타 세대는 천장형으로 설치됨
- 세대 분전반이 세대 내에 노출 설치되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음
- 세대 통신 단자함이 신발장 뒷면에 노출 설치되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음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 변경은 불가함
- 일부세대 실외기실 문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 일반 사항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당 대지 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시 확정측량)로 인해 대지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일부세대는 공사 중에 품질확보 및 시공성검토를 위하여 샘플하우스(현장 주택전시관)로 사용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원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입주 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청약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협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도배, 도장, 가구, 타일, 위생기구공사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입주자 사전방문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임(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함)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항,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검토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람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과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 표현의 오류 및 오기 등의 수정과 성능의 개선 및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허가 또는 설계변경 등은 사업주체가 결정함
- 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방안은 실입주 후 입주민자치협의기구(가정)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분양안내책자(팸플릿 등)에 표현된 각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팸플릿 제작 과정상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복제 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음
-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 중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사용품 등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속도, 탐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정일(입주자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7.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등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마감자재목록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등은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게시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문(2020.12.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8.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시공업체(사업자등록번호)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1	한국토지주택공사 (605-82-11744)	(주)서한 (502-81-16195)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주식회사 선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 9. LH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범천2지구 1블록 홈페이지 안내

사업지 위치	홈페이지 및 분양문의
<p><b>부산범천2 1BL 사업지</b></p> <p>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1123-124번지 일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식 홈페이지 [PC] <a href="http://www.lhbc2-centralhill.co.kr">www.lhbc2-centralhill.co.kr</a> [모바일] <a href="http://m.lhbc2-centralhill.co.kr">m.lhbc2-centralhill.co.kr</a></li> <li>■ 분양문의 [LH콜센터] 1600-1004 (평일 : 09:00 ~ 18:00) [LH부산울산지역본부 판매팀] 051-460-5456 (평일 : 09:00 ~ 18:00)</li> </ul>



**2024. 05. 22.**  
**부 산 울 산 지 역 본 부**